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6

발의연월일 : 2024. 12. 12.

발 의 자: 박홍배 • 윤준병 • 박정현

박희승 • 이용우 • 안호영

민병덕 • 김우영 • 김현정

김태선 • 박해철 • 고민정

강훈식 • 황명선 • 이연희

김한규 · 김태년 · 이수진

신영대 • 문정복 • 백혜련

추미애 · 김재원 · 전현희

서미화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 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 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

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로 한다. 제1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② (생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
	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
	<u>로 한다.</u>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생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u>①</u>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
	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
	<u>로 한다.</u>